

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1/12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4.06.2020 제품: **Tinuvin® 622 SF** 버전: 7.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Tinuvin® 622 SF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플라스틱제품 첨가제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한국바스프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14-16층 04513

14-16F. KCCI Bldg., 39,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513

전화번호: +82 2 3707-3100 / -7500 (제품 문의)

팩스번호: +82 2 3707-3122

이메일 주소: Chemregulation-KR@basf.com

비상시 연락처:

Local emergency number:

전화번호: 080 770 3100 (사고접수) International emergency number: 전화번호: +49 180 2273-112

버전: 7.0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4.06.202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2. 유해성 · 위험성

유해·위험성 분류:

해당없음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경고표지 부착 대상 화학물질이 아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본 제품은 특정 조건 하에서 분진 폭발 가능성이 있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특성

입체장애아민 광안정제

Butanedioic acid, dimethyl ester, polymer with 4-hydroxy-2,2,6,6-tetramethyl-1-piperidineethanol

CAS번호: 65447-77-0

기존화학물질 목록번호: KE-11852

구체적 성분은 영업비밀임.

특별히 확인된 유해성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일반적인 조치사항:

오염된 옷을 벗을 것.

흡입했을 때:

환자를 안정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의료 조치를 취할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낼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적어도 15분 정도 흐르는 물로 씻어낼 것.

버전: 7.0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4.06.202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고, 물 200-300 ml 를 마시시오.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증상: 정보, 즉 증상과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2항의 GHS 라벨 문구 및 11항의 독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알려진 증상 및/또는 영향은 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유해성: 자료없음

처치: 증상에 따른 처치(세정, 기능 회복), 확인된 특정 해독제 없음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건분말(dry powder), 포말

부적절한 소화제:

이산화탄소

기타 유해 영향: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질/제품을 뒤섞지 말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유해 증기

연기/안개 방출 위에 언급된 물질/물질군이 화재 시 방출됨.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급식 호흡 보호장비 착용할 것.

추가정보:

위험 정도는 연소되는 물질과 화재 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된 소방수를 처리하도록 할 것.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분진 형성을 피할 것. 개인 보호의를 착용할 것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오염수/소방수 함유 배수구/지표수/지하수에 방류하지 말 것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시: 적절한 도구로 담아 폐기할 것. 대량 누출 시: 분진 결합제에 담아 폐기할 것 먼지발생을 피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취급

국소배기장치 없이 대량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흡 보호를 할 것.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보호조치:

분진 형성을 피할 것.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할 것.

분진폭발단계: 분진폭발등급 1 (Kst-value >0 up to 200 bar m s-1).

분진폭발등급 1 (Kst-value >0 up to 200 bar m s-1).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보관

저장 조건에 대한 추가정보:용기를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노출기준 (작업장 관리기준의 구성 요소):

구체적으로 알려진 작업상 노출한계 물질은 없음

일반적인 분진 한계치를 유지할 것.

Particles, not otherwise specified, respirable TWA 값 3 mg/m3 (ACGIHTLV), 흡입성 먼지

Particles, not otherwise specified, inhalable TWA 값 10 mg/m3 (ACGIHTLV), 흡입가능한 입자

생물학적 노출기준: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사업주는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저농도 혹은 단기적 영향에 적합한 호흡 보호: 고체 및 액체 입자용 중간효율 입자필터 (예; EN 143 또는 149, 타입 P2 또는 FFP2)

손 보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장기적 직접적 접촉에 적합한 물질(추천: 보호 인덱스 6, EN 374에 따른 침투시간 480분 이상) 예 질소고무(0.4mm), 클로로프렌 고무(0.5mm), 염화폴리비닐(0.7mm) 외 기타

보충설명: 사양은 시험, 문헌 및 장갑제조업자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거나 비슷한 물질로 부터 유추한 것임. 온도와 같은 여러 조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학보호장갑의 실직적인 수명은 테스트에서 결정된 투과시간보다 더 짧을 것으로 여겨짐.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조업자의 용도 지시사항에 따라야 함.

눈 보호:

측면이 보호되는 보안경

신체 보호:

활동과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신체 보호구를 선택할 것.

일반적인 보호 및 위생상 주의사항:

밀폐 작업복 착용 권장 산업위생 및 안전규정에 따라 취급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분말, 거칠게 갈린상태. 색: 백색에서 옅은 노란색

냄새: 무취

냄새 역치: 적용가능한 정보가 없음.

pH 값: 6.3

(1 %(m), 20 - 25 ° C)

(수용액)

녹는점/어는점 범위: 50 - 135 °C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인화점: > 250 ° C (DIN 51376)

증발 속도:

이 제품은 비휘발성 고체임.

인화성 (고체/가스): 고인화성이 아님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분류 및 표시와 관련없는 고체임.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분류 및 표시와 관련없는 고체임.

자연발화 온도: 400 °C

370 ° C (BAM)

분해 온도: > 350 °C ()

자기발화성: 자기발화하지 않음

자기가열능력: 본 물질은 자발적발열 가능성이 없음.

최소 발화에너지:

자료없음

폭발위험성: 비폭발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 화재 확산성 없음

증기압: 0.0000025 Pa

(20 ° C)

밀도(비중): 약 1.22 g/cm3

(20 ° C)

상대밀도:

자료없음

벌크밀도: 400 - 550 kg/m3

증기밀도:

자료없음

수용해도:

< 1 mg/I

(20 ° C)

습도측정기: 비흡습성 n-옥탄올/물 분배계수(log Pow) : 5.2

(20 - 25 ° C)

휘발성/물-공기:

물질은 물 표면으로부터 대기로

증발하지 않음.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

자료없음

점도, 유동적:

결정되지 않음.

점도, 운동학적:

자료없음

몰 분자량: 3,100 - 4,000 g/mol

기타 참고사항:

필요할 경우, 본 항목에 그 외 물리화학적 매개변수 정보를 표기함.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7번 항목의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할 것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분진 형성을 피할 것. 분진 침적을 피할 것 모든 발화원을 제거할 것 : 열, 스파크, 불꽃. 정전기 방전을 방지할 것

피해야 할 물질:

강산, 강염기, 강산화제

금속에 대한 부식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없음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산업보건의 이유로 분진제거법이 행해졌지만, 제품의 미세한분진은 분진폭팔을 일으킬 수 있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지정된 대로 저장 및 취급한 경우 유해 분해물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급성독성

급성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D50 쥐 (경구): > 5,000 mg/kg (OECD Guideline 423)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급성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C50 쥐 (흡입): > 1,100 mg/m3

급성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경피):자료없음

자극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토끼): 비자극성(OECD Guideline 404)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토끼): 비자극성(OECD Guideline 405)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기타 기니 픽: 비 과민성 (OECD Guideline 406)

반복 투여 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 반복 노출 포함)

반복투여 독성 평가:

경험과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적절한 주의사항 대로 취급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본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되지 않음. 각 성분에 대한 성질에 대한 자료로부터 유추되었음.

자료없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변이원성 평가:

본 물질은 박테리아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음. 본 물질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서 변이원성을 나타내지 않음.

발암성

발암성 평가:

제공되는 모든 정보평가에 따라 발암성영향의 징후가 없음.

사료로 주입된 본 물질의 rat에 대한 장기시험에서 발암성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생식독성

생식독성 평가:

버전: 7.0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4.06.202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구성성분에 근거하여 생식독성에 대한 우려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노출):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노출) 은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노출):

참조: 반복투여독성

독성의 수치적 척도 (급성독성 추정치 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 평가:

본 제품은 수중생명체에 대하여 심각한 유해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적절한 저농도의 생물학적 처리 설비에 도입 될 때 활성 슬러지의 분해 활성 억제는 예상되지 않음.

어독성:

LC50 (96 h) > 100 mg/l, Oncorhynchus mykiss (기타, 통계수치)

본 제품은 시험배지에서의 용해도가 낮음. 가용화제를 넣은 수용액으로 시험하였음. 세부적인 독성 영향은 농도와 연관이 있음 용해도 범위 내에서 독성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수생무척추동물:

EC50 (24 h) 25 mg/l, Daphnia magna(물벼룩) (OECD Guideline 202, part 1,통계수치)

본 제품은 시험배지에서의 용해도가 낮음. 가용화제를 넣은 수용액으로 시험하였음. 세부적인 독성 영향은 농도와 연관이 있음

수생식물:

EC50 (72 h) > 100 mg/l (생물체 총량), Scenedesmus subspicatus (통계수치)

본 제품은 시험배지에서의 용해도가 낮음. 가용화제를 넣은 수용액으로 시험하였음. 세부적인 독성 영향은 농도와 연관이 있음 용해도 범위 내에서 독성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미생물/활성슬러지 영향:

EC20 (3 h) > 100 mg/l, (OECD Guideline 209, 통계수치)

육생생물에 대한 독성 평가:

자료없음

토양 이동성

환경 구분간의 수송평가: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토양 고체상에 대한 흡착 가능성 있음

본 제품 자체는 테스트되지 않음. 본 기술된 내용은 제품의 구조로부터 유추한 것임.

잔류성 및 분해성

생분해성 및 제거율 평가 (H20) :

본 제품은 물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물에서 분리될 수 있음

제거정보:

생분해되지 않음

생물 농축성

생물농축가능성 평가:

생물체에 현저하게 축적되지 않음.

생물 농축성:

생물농축 계수: < 10, Cyprinus carpio

기타 유해 영향

다른 환경독성정보:

관리 및 통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환경에 유출해서는 안 됨.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또는 소각처리 할 것.

오염된 용기:

오염되지 않은 포장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함.

세척되지 않은 팩은 내용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자,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국제운송규정: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해상운송

IMDG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Sea transport

IMDG

Not classified as a dangerous good under

transport regulations

항공운송

IATA/ICAO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Air transport IATA/ICAO

Not classified as a dangerous good under

transport regulations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국내 법규/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자료작성 및 비치 등에 적용 대상 화학물질이 아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아니오

관리대상 유해물질: 아니오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아니오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 아니오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물질: 아니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허가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물질:

제한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물질:

금지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일자 / 개정: 04.06.2020 버전: 7.0

제품: Tinuvin® 622 SF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503488/SDS_GEN_KR/K0)

인쇄일 21.12.2020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위험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해당 법규의 준수는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최초 작성일자 12.03.2012

왼쪽 여백에 수직선은 기존 버전의 개정을 나타냄

본 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당사의 최신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전보건자료는 제품의 기술자료(Technical Data Sheet; TDS) 나 시험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 CoA)가 아니며, 제품의 규격합의서 (Specification agreement)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안전보건자료에서 확인된 제품의 용도는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의 계약 상의 합의된 품질보증을 의미하거나 계약을 통해 지정된 용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제품의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존중하고 현행 법률을 준수할 책무가 있습니다.